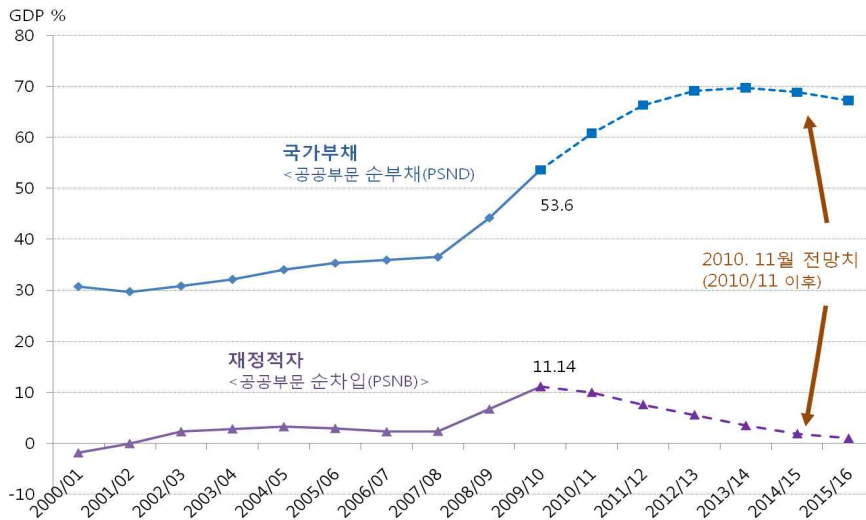


VI. 영 국

1. 재정추이

- FY2007/08까지는 재정적자 규모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적자 및 부채 규모가 급속히 증가
 - FY2000/01에 재정흑자를 나타내기도 하였으나 FY2009/10에 적자규모가 GDP의 11.1%를 기록
 - FY2010/11 이후 재정건전화 정책을 통해 재정적자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국가부채 규모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계속 경신중
 - FY2009/10 국가부채 규모는 GDP 대비 53.6%이며 FY2013/1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

[그림 VI-1] 영국 재정추이 및 전망



주: PSNB와 PSND는 한시적인 금융개입 효과 제외한 지표임
 자료: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Public Sector Finance 2010. 12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0. 11

2. 재정건전화 방안

- 사상 최대의 재정악화 상태에서 2010년 5월 총선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보수-자민 연립 정부가 집권하면서 세입 인상보다 지출 감축에 중점을 둔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진
 - 노동당 정부는 2008년 이후 경기부양대책과 함께 선별적 증세를 병행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 2010년 3월 예산안에서는 FY2010/11~FY2014/15까지 세입인상 총 190억파운드, 지출삭감 총 380억파운드를 계획
 - 연립정부가 집권 직후 발표한 2010년 예산안에서 FY2014/15에 연간 400억파운드(세입 80억파운드 인상, 지출 320억파운드 감축)의 재정확보를 계획
 - 중기재정계획(2010. 10)에서 70억파운드 규모의 복지지출을 추가로 삭감하여 연간 총 180억파운드의 복지삭감 추진중

- 또한 2008년 한시적 재정준칙을 채택하여 일시적 재정준칙 이탈을 허용하고, 2010년 초 재정책임법 제정, 2010년 재정건전화목표 설정으로 총량적 재정통제 강화
 - 2008년 경기침체로 재정준칙(fiscal rule)을 이탈하게 되자 영국 정부는 사전예산안 2008(2008년 11월)에서 한시적 재정준칙을 채택
 - 중기적인 재정안정성에 대해 명확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는 전제하에서 공공부문 부채 기준의 일시적 이탈을 허용
 - 재정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Act 2010)을 통해 적자감축 목표 구체화
 - GDP 대비 적자규모가 FY2013/14에 5.5% 이하로 감소시킴
 - GDP 대비 부채규모는 FY2015/16부터 감소추세로 전환되도록 함
 - 2010년 총선 이후 집권한 보수-자민 연립정부는 이전 정부의 재정책임법을 폐기하고 재정건전화 목표(Fiscal Mandate) 설정
 - FY2015/16 이내에 경기변동을 조정한 경상수지의 균형 달성 및 부채규모 감축

가. 재정건전화 방안: 세입 측면

- 부가가치세, 사회보장세 인상 등 세입 확보를 통한 재원확대 방안을 꾸준히 추진
 - 경기부양을 위한 부가가치세 한시적 인하 종료와 유류세, 주세 등 일부 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고위험 투자에 대응한 은행세 등을 새로 도입하고 세금탈루 방지를 위한 지속적 대책 수립
 - 경기침체로 세율 인상 시점을 연기해 온 법인세의 경우는 정권교체 이후 인하 방침으로 전환

- 세입확보 계획 중 특히 사회보장 재원 확대를 위한 국민보험기여금(NICs) 인상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음
 - 영구세로 도입된 은행세와 세금탈루 방지 대책의 경우도 단기간의 대책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음

1) 재정적자 감축 방안

- (소득세 인상) FY2010/11부터 15만파운드를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 추가 소득세율 50%를 적용하고 연금기여금 소득공제율을 20%까지 제한
 - 2008년 11월 사전예산안에서 처음으로 제안하고 2010년 4월 연간 재정법으로 최종 승인
 - 그러나 정권교체 후 고소득자에 대한 연금공제 제한 규정은 폐지됨

- (VAT 인상) FY2010-11에 약 29억파운드, FY2014/15에 약 135억파운드 확보 예상
 - 현 정부는 집권 후 첫 번째 예산안에서 부가가치세율을 20%로 인상(2011. 1. 4부터 효력 발생)
 - 세입확보를 통한 재정건전화 계획은 대부분 부가가치세 인상 효과임
 - 2010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율 한시적 인하를 종료하고 17.5%로 환원 (2010년 3월 예산안)

- (기타 간접세) 2010년부터 물가상승을 초과하여 연료세 리터당 2.76펜스, 주류세 2~10%, 담배세 1% 인상
 - 담배세의 경우 세율 인상으로 3,500만파운드 세입 증가 예상
 - 소득세 인상과 마찬가지로 2008년 11월 사전예산안에서 제안하고 2010년 4월 연간 재정법으로 최종 승인

- 보험료세(Insurance Premium Tax) 및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 인상으로 FY2014/15에 약 14억파운드 확보(긴급예산안, 2010. 6)
 - (보험료세) 2011. 1. 4부터 표준세율은 5%에서 6%로 인상하고 고세율은 17.5%에서 20%로 인상
 - FY2010/11에 약 1억파운드, FY2011/12이후는 약 5억파운드 규모로 예상
 - (자본이득세) 2010. 6. 23부터 자본이득세 고세율을 10%p 인상, 28% 세율 적용
 - FY2011/12에 약 7억파운드, FY2014/15에 약 9억파운드 확보

- (자산매각) 재정확보를 위해 2년에 걸쳐 총 160억파운드의 정부자산매각 결정(총리실 발표, 2009년 10월)
 - 160억파운드 중 30억파운드가량 자산이 1차 매각 대상에 포함됨
 - CTRL(Channel Tunnel rail link), 우라늄농축컨소시엄 유렌코(URENCO) 정부지분 33% 등

2)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 (사회보장세) FY2011/12부터 국민보험기여금(NICs) 0.1%p 인상
 - 경기회복으로 실질소득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FY2011/12부터 국민보험기여금을 0.5%p 인상(사전예산안 2008년 11월)
 - 사전예산안 2009에서 0.5%p를 추가하여 총 0.1%p 인상함

□ (은행세) 은행세(Bank Levy) 도입으로 연간 25억파운드 규모 확보 예상

- 12월 발표한 Finance Bill 2011 초안에서 은행세율을 2011년 0.05%, 2012년 이후 0.075%로 확정하였으나 2011. 2. 8에 2011년 은행세율을 2012년 이후 세율과 동일하게 변경함
 - 은행세 제안 당시,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고려했던 경과조치 기간이 현 시점에서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판단
 - 기발생된 효력분을 상쇄하기 위한 조치로 2011. 3. 1~2011. 4. 30까지 세율을 0.1%로 조정하고 2011. 5. 1 이후는 0.075% 세율 적용
- 세율 변경에 따라 2011년 은행세입은 변경 전보다 8억파운드 증가한 25억파운드로 전망됨
- 은행세는 2010년 6월 발표한 긴급예산안에서 도입을 제안한 것으로, Finance Bill 2011 초안에서 확정된 세율은 당시 정부안보다 각각 0.01%p, 0.005%p 인상

□ (조세회피 방지) 조세회피 방지대책에 대한 법률 정비로 향후 4년간 50억파운드 확보 가능

- 2010년 12월, 세금계산서를 줄이기 위한 계열사 간 대출 및 파생상품 거래 제한 등 즉시 발효되는 일부 조항을 포함하여 조세회피 방지대책 관련 법률 정비
- 현 정부는 집권 후 노동당 정부의 계획 중 일부를 수용하고 입법화를 추진
 - 연정 협약 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노력에 합의하고 긴급예산안(2010. 6)에서 인 지세 감면을 악용한 조세회피 방지정책 보완 등 입법화 추진 발표
 - 해외탈루 방지, 은행과세지침 마련 등 조세회피 방지대책은 노동당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정책임
- 총선 전 발표된 예산안(2010. 3)에서는 조세회피방지정책의 입법화를 통해 15억 파운드 확보, 기타 대책으로 추가 40억파운드 확보 예상
- 영국 국세청(HMRC)에 조세회피 방지대책을 위한 재원 9억파운드를 추가 배정하여 FY2014/15까지 연간 70억파운드 규모의 추가 세입 확보 전망(2010. 9)

나. 재정건전화 방안: 세출 측면

- 공공부문 개혁과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삭감 등 악화된 재정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지출감축 추진
 - 2010년 3월 노동당 정부는 4년간 총 380억파운드의 지출삭감 계획 발표
 - 이후 집권한 연립정부는 5년간 총 870억파운드 규모로 지출감축 확대

(단위: 백만파운드)

(2010년 6월 예산안)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지출감축 규모	+5,245	+8,855	+17,300	+23,820	+31,940
中 복지 감축 규모	+385	+2,010	+4,710	+8,150	+11,040

- 재정건전화 목표 설정 등 총량적 통제 외에도 복지지출 삭감과 복지제도 개혁 등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음
 - 대규모 복지지출 삭감을 단행하고 복지급여 상한(Benefit Cap) 설정, 복지급여 단일화(Universal Credit)를 비롯한 복지제도 개혁에 착수

1) 재정적자 감축 방안

- (공공부문 개혁) 공공부문 임금동결, 정부효율성 강화를 통한 지출 절감, 인력 감축 등 다양한 노력을 시도
 - 공공부문 임금인상 억제 및 공공부문 연금개혁 등 FY2012-13까지 공공부문에서 200억파운드 삭감 계획(2010년 3월 예산안)
 - FY2011-12, FY2012-13 공공부문의 임금상승률을 1% 이하로 통제하여 연간 34억파운드의 지출 억제
 - 5년 이내에 공무원(런던) 15,000명 인원 감축

- FY2012-13까지 공공부문 및 중앙정부 효율화로 110억파운드 절감 목표 계획 (2010년 3월 예산안)
 - 80억파운드는 공공부문 효율화를 통해 달성하고, 나머지 30억파운드는 컨설팅, 홍보, IT 프로젝트, 공공부문임금 삭감과 에너지 효율화 등을 통해 달성
 - 정부부처 효율화 목표: 아동·학교·가족부 6억 5천만파운드, 국방부 5억 5천만 파운드, 국세청 2억 3,600만파운드, 노동·연금부 4천만파운드 등
- 일반정부의 공공서비스 인력을 33만명 감축 전망
 - 긴급예산안(2010. 6)에서는 약 49만명의 공공인력을 감축할 전망하였으나 2010년 11월 재무장관의 가을성명(Autumn Statement)에서 약 33만명으로 축소 전망
- 연정합의 직후 각료 및 고위 공무원 임금삭감 발표
 - 각료 보수 삭감으로 의회 임기 중 총 300만파운드 절감 예상
 - 고위공무원 보수관련 FY2010/11 예산 약 1,500만파운드 삭감
- 연소득 21,000파운드 이상의 공공부문 근로자 임금을 2년간 동결 (2010년 6월 예산안)

□ (사업예산 삭감) 핵심 공공서비스를 제외한 후순위 사업, 효율성이 낮게 평가된 사업 등에 대한 전방위적 지출 삭감

- 정책우선도가 낮은 사업 중 50억파운드 규모의 지출 삭감(2010년 3월 예산안)
 - 지역개발청 3억파운드, 아동·학교·가족부(DCSF) 3억 5천만파운드, 지역사회부 (CLG) 1억 6천만파운드 삭감
 - 사법제도 및 법률구조 개혁 3억 6천만파운드, 주택정책 3억 4천만파운드, 교통할인(노인, 장애인 등)제도 개선 1억 8천만파운드, 해외출장비 등 공무원수당 삭감 및 폐지 1,300만파운드, 주택급여 3,500만파운드 등 삭감
- 총선 후 연정합의 과정에서 FY2010-11 비일선 서비스 예산 60억파운드 삭감과 아동신탁기금(CTF) 정부보조 중단에 합의
- 연정합의 후 첫 번째 재정긴축화 조치로 62억파운드 규모의 지출을 삭감하고 사업평가(value for money) 결과를 토대로 저효율 사업은 취소 또는 연기

- 약 62억파운드의 지출을 삭감하되, 핵심 공공서비스는 보장
 - : 정부조달사업 계획 조정 등 계약의 연기 및 중단(17억파운드), 정부 컨설팅 및 홍보 비용(11억 5천만파운드), 독립 공공기관 비용(6억파운드), 부동산 비용 삭감(1억 7천만파운드) 등
 - : 학교, Sure Start, 16~19세 대상 교육지출은 지출삭감에서 제외
 - : 62억파운드 중 5억파운드는 직업기술교육, 공공주택 등에 재투자 가능
- VfM(사업평가) 결과를 토대로 효율성이 낮은 사업을 취소 또는 연기
 - : 약 20억파운드의 12개 사업 예산삭감, 약 85억파운드 규모의 12개 사업 보류
 - : 20억파운드 중 약 3억 7천만파운드는 5월 발표한 62억파운드 긴축안에 포함
-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FY2010-11 지출 중 최소 10억파운드 삭감 계획

2)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 (복지지출 삭감) FY2014-15에 연간 180억파운드 규모의 복지지출 감축을 시도
 - 2010년 3월 예산안에서 노동당 정부는 근로유인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한 복지제도 개혁으로 향후 5년간 총 12억파운드 절감 계획
 - 긴급예산안에서 발표한 연간 320억파운드 규모의 지출삭감 중 복지지출 감축 규모는 연간 110억파운드에 달함
 - 2011년부터 사회보장급여, 세액공제, 공공서비스연금의 급여인상 물가연동 기준을 소매물가지수(RPI)에서 소비자물가지수(CPI)로 변경
 - 중기재정계획(Spending Review 2010)에서 추가로 연간 70억파운드 규모의 복지지출 삭감
 - 고용지원수당 축소, 근로세액공제 동결, 자녀급여(Child Benefit) 동결 등
 - 중기재정계획의 복지지출 삭감 내용 및 규모는 아래 표와 같음

개혁안	세부내용	삭감규모
고용지원수당 (Employment Support Allowance: ESA)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WRAG(Work Related Activity Group)에 포함되는 경우 ESA를 1년간으로 제한 약 1백만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ESA는 장애나 건강상 이유로 근로를 할 수 없는 자에게 제공되는 급여로 장애정도에 따라 주 91~97파운드 지급 	FY2014-15 기준 연간 20억파운드
가구당 복지급여 한도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생활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 전쟁미망인연금(War Widow Pension), 일회성 급여는 제외 	FY2014-15 기준 연간 2억 7천만파운드
고세율납세자 자녀급여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3년부터, 가구소득 기준 43,875파운드 이상 	FY2014-15 기준 연간 25억파운드
근로세액공제 동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1년 4월부터 근로세액공제 기본 요소(basic elements) 와 30시간 요소에 대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연동분만 적용 현재 기본요소는 연간 1,920파운드, 30시간 요소는 연간 790파운드임 	FY2014-15 기준 연간 6억 2,500만파운드
근로세액공제 자격조건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년 4월부터 2자녀 이상의 부부의 근로세액공제 자격조건에 부부합계 근로시간 24시간 이상 추가 현행: 부부 중 1인의 근로시간 최소 16시간 이상 	FY2014-15 기준 연간 3억 9천만파운드
근로세액공제 자녀보육 요소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1.4월부터 근로세액공제 자녀보육 요소는 비용의 80%에서 70%로 삭감 	FY2014-15 기준 연간 3억 8,500만파운드
지역주거수당에서 Shared Room Rate 연령제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의 Shared Room Rate는 지역주거수당 규칙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주거급여를 받는 25세 미만의 독신에 대해 적용 연령제한을 35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동일한 비율을 적용 중증장애 요건으로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자는 제외되며, 연령제한 확대 조치는 총 88,000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 	FY2014-15 기준 연간 2억 1,500만파운드
장애생활수당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FY2012-13부터 요양시설 수급자의 장애생활수당 중 이동편의서비스 요소 부분 지급 중지 자가거주 수급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약 58,000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 	FY2014-15 기준 연간 1억 3,500만파운드

지방세보조급여 삭감 및 지방부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FY2013-14부터 지방세보조급여(Council Tax Benefit)를 최대 10% 삭감하고 지방정부 및 권한이양 행정부에 급여지급에 대한 자율성 부여 	FY2014-15부터 연간 4억 9천만파운드
연금공제에서 연령가산부분 동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연금에 추가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한 65세 이상인 자에게 적용되는 최대 연령가산(Saving Credit) 한도를 2015년까지 동결 최대한도는 독신 20.52파운드, 부부 27.09파운드로 약 180만 가구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 	FY2014-15 기준 연간 3억 3천만파운드

□ (복지제도 개혁) 급여상한 설정, 급여제도 간소화, 연금 및 의료부문 제도 개혁 등 장기적 대책 마련

○ 2013년부터 가구 기준으로 총사회보장급여의 상한(Benefit Cap) 설정

- 비근로가구의 복지급여가 평균가구소득을 상회하지 않도록 근로가구의 세후(사회보장기여금 포함)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상한액 설정
- 2013년 부부 혹은 한부모 가구의 평균소득은 주당 506파운드, 독신가구는 주당 350파운드 정도로 예상됨
- 상한 설정 대상 급여는 주요 소득대체 급여인 소득보조, 구직자수당, 고용지원수당과 기타 자산조사 급여인 주거급여, 지방세급여, 그 외 자녀수당 및 자녀세액공제, 간호인수당, 산재장애급여 등
- 무상급식 등 일회성 급여, 비현금 급여, 전쟁미망인, 장애생활수당 및 근로세액공제 수급가구는 상한 적용에서 제외

○ 2013년부터 복잡한 사회보장급여를 Universal Credit으로 전환

- 현재 지방정부, Job centre Plus 등 여러 곳에서 주관하는 사회보장급여 전달체계 단일화
- 기여형 구직자수당(Contributory Jobseeker's Allowance), 자녀급여, 장애생활수당 등의 비자산조사 급여는 전환대상에서 제외
- 현행 제도에서는 수급자의 신고에 따른 재정 상황에 의존하고 있어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Universal Credit 전환과 함께 사회보장급여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 NHS 효율화 프로그램(Quality, Innovation, Productivity & Prevention)을 통해 FY2011-12~FY2014-15까지 연간 200억파운드의 지출절감 목표 설정
 - 이전 노동당 정부에서 발표한 암환자 1:1 간호 등 일부 정책은 정책우선순위에 따라 시행 연기
- 2013년까지 1차 진료기관(Primary Care Trusts)과 전략 의료기관(Strategic Health Authorities)을 폐지
 - NHS 관리구조의 단일화, 비용절감 및 일선 의료인력 역량 강화 도모
 -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18개 중앙정부부처 산하 의료기관(Arms Length Bodies)을 2013년까지 10개로 축소
- 기초국가연금의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2020년 기준 66세로 상향 조정
 - 2015~2025년까지 약 300억파운드의 지출 절감 기대